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8. 14.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약칭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CP)을 모범적으로 운용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경감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경감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동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운용에 따른 제재수준 경감에 필요한 절차적 근거 마련

법 위반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운영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재수준을 경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CP 운영에 관해 세부사항을 조사하여 조사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정위는 조사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경감, 신문공표 수준 하향조정, 고발 면제 등의 제재수준 경감을 최종 결정한다.

II.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1) 피심인에 대한 법 위반 관련 증거자료의 제한적 제공(제33조제6항)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 관련 증거자료를 피심인측에 제공하지 않았으나, 피심인이 자신으로부터 제출 받은 증거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심의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보강하였다.

(2) 신고인에 대한 회의개최 통지 의무화(제33조제4항)

지금까지는 신고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심판정에서 열릴 경우 당해 사건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할지 여부가 공정위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인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신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의 소지를 제거하고 알권리를 보장하여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III. 사건처리절차상 피심인 권익보장 수단의 확대

(1) 경고에 대한 심의요청권 신설(제51조의2제3항)

법 위반이 경미하거나 법 위반을 자진하여 시정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고(警告) 조치로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고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법 위반이 없음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회의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식 심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만일의 경우 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피심인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하였다.

(2) 약식절차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개선(제70조제2항 및 제3항)

사건조사과정에서 피심인이 스스로 자신의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수락하여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건에 대해, 추후 법 위반사실 자체가 없다거나 조치수준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면서 자신의 수락 의사를 번복하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지금까지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각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이의신청 내용(법 위반사실이 있는지 여부, 조치수준이 과중한지 여부 등)에 대해 정식절차를 거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심의를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비록 피심인이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치의견을 수락하여 약식절차에 따라 결정된 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라 할지라도, 피심인에게 불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피심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3) 임시중지명령의 심의방식 변경(제58조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의해 소비자나 경쟁사업자 등에게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해 표시·광고를 중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당해 표시·광고 행위를 신속하게 중지시킨다는데 중점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술심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하였으나, 이러한 임시중지명령은 당해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광고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 엄정한 의결을 위해 원칙적으로 광고주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술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 대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도록 개정하였다.

IV. 신규 법 제정에 따른 사건절차규칙 보완

최근 제·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방문판매법상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각종 고시 규정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반영(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등)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3장 사건처리절차(본지 부록 제52면 이하) 참조.

2002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공정위는 2002년 8월 1일 2002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였다.

2002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55.0조원이며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27.5%로 전년도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출자총액 46.9조원 대비 8.1조원(17.3%)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규 지정된 공기업집단 등의 출자총액이 크기 때문이며, 기존 11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29.6조원으로 전년 대비 9.4조원 감소하였다.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 27.5%는 전년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출자비율 36.9%보다 9.4%p 감소한 수준이고, 민간기업집단의 출자비율도 30.6%로서 지난해에 비해 6.3%p 감소하였다.

2002. 4. 1. 현재 민간기업집단의 출자총액(31.4조원) 중 적용제의 및 예외인정출자는 총 13.0조원(적용제의 5.9조원, 예외인정 7.1조원) 수준이며, 한도초과출자를 미해소하는 등의 범위만 출자금액이 3.4조원 수준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적용제의출자는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사업 영위회사에 대한 출자(4.7조원, 79.6%), SOC법에 대한 출자(0.9조원, 14.6%) 등으로, 예외인정출자는 외국인투자기업 2.4조원(33.9%), 구조조정출자 2.3조원(32.5%), 부실기업소유주식 1.6

조원(22.3%) 등으로 구성되었다.

금년에 신규 지정된 7개 공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23.6조원이며, 출자한도초과금액은 0.1조원 수준이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30.3%로 지난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45.8%에 비해 15.5%p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기업집단이 금년부터 신규 지정된 것에 기인한다.

민간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45.6%로서 지난해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45.8%와 유사한 수준이고, 특히, 계열사지분율은 41.6%(자기주식 포함)로서 지난해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사지분율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과도한 신규출자가 억제되고 한도초과출자가 해소되는 등 대기업집단의 출자행태가 부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지분율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등 총수가 계열사 출자를 지렛대로 이용하여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유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출자한도초과분을 미해소하고 있는 등 범위만 회사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의결권제한명령 등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스팸메일·전화·단문메시지(SMS)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 후속대책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팸메일과 최근 들어 극성을 부리고있는 스팸전화로부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온라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새로 시행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내용에 따라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후속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7. 1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스팸메일·휴대폰메시지·전화이용마케팅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 상호, 주소 등 자기신원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전자상거래보호법 제13조),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는 광고이거나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임을 알기 어렵도록 하는 등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전자상거래

보호법 제21조제1항제1호)하고 있으며, 구매거부 의사에 반하는 전자우편이나 전화송신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스팸메일·전화를 통한 구매권유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사이트를 신설(www.nospam.go.kr이나 www.antispam.go.kr)하고,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사이트에 등록된 전자우편주소나 전화번호의 명부를 관련 사업자(통신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업자 및 스팸메일·전화로 신고된 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전화번호에 구매권유광고를 하는 경우 구매거부의사에 반하는 전자우편 또는 전화송신행위 등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보호법 제21조제1항제5호 등을 적용하여 규제할 방침이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 8. 14.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의 개정을 승인하였다.

동 개정은 금융환경이 급변한 만큼, 위원회가 1996. 10. 8. 보급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여건변화에 상응하도록 개정하여 금융거래에 있어

서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고 민원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출거래시 이자율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를 명시토록 하고 채무자인 고객에게 금리선택권을 부여하였고, 둘째, 이자율 변경사유를

구체화하여 은행의 일방적인 금리변경을 제한하고, 기업용 약관에만 허용하던 고객의 신용상태 변화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을 가계용 약관에도 인정하였으며, 고정금리를 선택한 고객에게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은행이 이자율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개별통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고객이 전액부담 하도록 되어 있던 대출관련 부대비용 규정을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고객이 부담하도록 개정하였고, 넷째,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과 부할시 원칙적으로 은행은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여 보증인의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보증인 신용악화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보증인 교체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다섯째, 임의의 상환금이나 제에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가압류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 요건을 강화하여 담보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현재의 당

연 기한이익 상실사유에서 은행의 청구(독촉)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완화하여 채무자에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일곱째,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권채무 관련 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나 전표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이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내용을 확정된 후 변제토록 하였으며, 여덟째, 채무자가 주소 등의 변경신고를 개을리하여 은행의 통지가 연착이나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만 도달로 간주하도록 제한하였다.

공정위는 추후 여신거래약정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10개의 개별 부속 약정서를 제·개정할 예정이고, 전국은행연합회는 동 표준약관의 시행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전산 시스템 개발, 은행내규 개정, 실무지침서 발간 등의 관련 세부사항을 추진하고, 은행 이외에 유사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상기 제2금융권 등에도 동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 7. 31. 전원회의를 개최, (주)인터파크 등 11개 벤처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54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11개 벤처기업(지원업체)이 17개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총 27,501백만원 규모의 지원성거래를 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수혜업체 등이 받은 지원금액(실제거래가격-정상거래가격)은 총 3,652백만원이다.

부당내부거래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계열회

사에 자금을 직접 지원(대여)하면서 무이자, 저리 또는 이자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터보테크, 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솔루션, 오피콤, 삼지전자), 재무상태가 불량한 계열회사를 위하여 예금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 대출지원(한글과컴퓨터, 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매각(인터파크), 계열회사에 대한 부동산 저가임대 및 상품·용역거래 과정에서 물품 납품대금 지연 수령(한글과컴퓨터, 유비케어, 한국정보공학, 로커스), 자기가 개발한 무체재산권(소프트웨어, 저작권, 프로그램소유권 등)을 계열회사에게 무상양도(한국정보공학) 등이다.

2002. 7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

공정위는 2002년 7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4월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2년 7월중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

사수는 364개에서 363개로 1개사가 감소하였고,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제외)의 계열회사수는 351개사에서 2002. 8. 1. 현재 360개로 9개사가 증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수는 2002. 7. 2. 현재 715개에서(신규편입 13개사, 계열제의 5개사) 2002. 8. 1. 현재 723개로 8개사가 증가하였다.

2002. 7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2. 7. 2.	편 입			제 외						증감	2002. 8. 1.
		회사 설립	주식취득 및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계		
전 체	715	3	10	13	3	2	0	0	0	5	8	723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364	2	-	2	2	1	-	-	-	3	-1	363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351	1	10	1	1	1	-	-	-	2	9	360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제외

2002. 7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13개사(주식취득 10, 회사설립 3)

□ 제외 : 5개사(지분매각 2, 합병 3)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업종명	사 유	회사명	업종명	사 유
한 화	(주)한화건설	건설업	회사설립	-	-	-
	한화기계(주)	제조업	"	-	-	-
롯데	(주)푸드스타	음식점업	주식취득	-	-	-
제일 제당	(주)중부산 케이블티브이	종합유선방송업	"	-	-	-
동국 제강	디케이해운(주)	해운중개업	회사설립	-	-	-
현대 백화점	(주)서초종합 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업	주식취득	-	-	-
	한국케이블티브이 관악방송(주)	"	"	-	-	-
	청주케이블 티브이방송(주)	"	"	-	-	-
	(주)디씨씨	"	"	-	-	-
	(주)한국디지털 케이블미디어센터	"	"	-	-	-
	(주)케이씨에스	"	"	-	-	-
	경북케이블 티브이방송(주)	"	"	-	-	-
	(주)부산케이블 티브이방송	"	"	-	-	-
엘 지	-	-	-	(주)엘지백화점	백화점	(주)엘지유통에 피합병
	-	-	-	한화기계(주)	제조업	"
금 호	-	-	-	인천공항외항사 터미널(주)	정기항공 운송업	지분매각
동 양	-	-	-	동양레미콘(주) (구,동양콘크리트공업)	시멘트제조업	"
현대산 업개발	-	-	-	현대피씨 엔지니어링(주)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업	현대산업개발(주) 에 피합병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 「한화」, 「엘지」, 「금호」